

2008. 8. 19.

수 신 : 제천시의회 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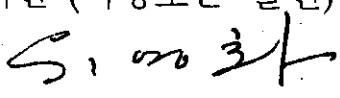
제 목 : 제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발의

위의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5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1. 의안발의 서명서 1부.

2. 제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발의자 : 유영화 의원 (서명 또는 날인)

외 5인 

제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발의 서명서

劉永和	S. 이화	
김영섭		
김영홍	김영홍	
김봉구		
신미장		
김기중		

제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274
------	------

발의연월일 : 2008. 8. 19.
발 의 자 : 유영화의원외 5인

1. 제안이유

-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소비절약의 실천과 자동차 중심의 교통문화에서 탈피하여 생활교통수단인 자전거 교통문화 전환으로 꽤적한 도시환경을 보전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권리와 책무를 정함(안 제3조, 제4조)
- 자전거이용 시설 정비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자전거이용 여건개선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여건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제7조)
-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한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안 제14조)

3. 조례안 : 별 입

4. 관계법령 : 별 입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2. 29 법률 제8852호]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1호]

○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 ·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06.5.30 건설교통부령 제329호]

붙 임 1. 제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관계법령

제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자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와 같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영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라 함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3. “자전거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다음 각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2.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이용의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자전거 이용 시책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시민은 다음 각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 이용여건의 개선사업에 참여와 협력할 책무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 주기로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정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여건개선 목표 및 시책방향
2. 자전거 이용 시설의 연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3.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밖에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시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도시계획 등 자전거 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개선기준의 설정) 시장은 자전거 이용 여건을 개선함에 있어서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및 자전거도로의 조명시설 등 추가적인 설계지침을 고려하여 개선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 ①시장은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은 자전거관련 단체의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시장은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관련 행사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 및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시장은 시내버스정류장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①자전거주차장은 당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주체가 관리한다.

②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동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③자전거주차장 관리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2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자전거타기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내 시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학생 등이 통근·통학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한다.

③시장은 시범기관의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과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자전거이용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주민의견 시책반영 사항
4.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16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공무원
2. 유관기관 공무원(제천교육청, 제천경찰서)
3. 자전거이용과 관련 있는 시민단체 대표
4. 그 밖에 시장이 자전거이용 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로 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한 때
2. 제16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상실된 때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9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第4條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務)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第5條 (자전거利用施設 整備計劃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비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정비계획 중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2. 연도별 정비계획
3.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第11條 (자전거駐車場의 設置·운영) ①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동법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주택단지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741호]

제7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노외주차장 총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100분의 5를 말한다.

②자전거주차장에는 자전거주차 장치를 설치하여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9조 (자전거주차장의 운영)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주차장의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주차요금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06.5.30 건설교통부령 제329호]

제16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자전거주차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자전거주차장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통행인에게 장애가 없도록 할 것
2. 자전거주차의 편의를 위하여 자전거주차장치 및 눈 · 비등을 가리기 위한 천막 등을 설치할 것
3. 자전거의 도난방지를 위한 장치의 설치를 용이하게 할 것
4.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